

부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단3184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한혜윤

피고B

변론 종결2022. 6. 23.

판결 선고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1. 6.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7. 5.1) 접수 제19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양수금채권

주식회사 D은 1996. 12. 18. E조합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15%, 지연배상금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은 주식회사 D이 E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은 주식회사 D 및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88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50,082,184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199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2. 2. 21.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피고의 모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1. 6.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피고와 C이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와 C은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49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 2. 9.자로 신고가 수리되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7.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92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자 C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524호로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고 2019. 6. 25.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524호, 2018하면524호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각 2019. 8. 19. 및 2019. 7. 24.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9. 6. 25. 무렵에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C의 면책신청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G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G 주식회사가 2018. 4. 9.에, H 주식회사가 2018. 8. 6.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9. 2. 1.에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각 마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늦어도 2019. 6. 25.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던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1/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그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시가는 276,599,750원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 아니라 임차인 I에 대한 2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는데, 위 각 채무액의 합계는 170,000,000원이며, 이는 C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인 138,299,875원($=276,599,750\text{원} \times 1/2$)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여 공유하게 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된다.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부동산이 공동상속되더라도 개별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부동산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된 채무를 포함한 전체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된 채무 전액을 담보한다. 따라서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상속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상속한 부동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물상보증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1996. 4. 3.자 접수 제8417호로 근저당권자 J,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후 K이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1. 1. 12.자 접수 제1070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가,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1997. 3. 27. 접수 제8552호로 근저당권자 L,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 소외 I는 2016. 10. 2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10. 24.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하였다.

○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76,599,750원이다.

○ 한편 망인은 L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21886호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의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0. 12. 16.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4)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 지분 가액은 138,299,875원(=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 276,599,750원 $\times$ 1/2)에 불과함에 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는 불가분채무로서 피고와 C이 각자 전부에 대해 책임이 있다)의 합계인 170,000,000원에 이른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그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C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인 75,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10,000,000원의 합계액인 8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170,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상속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이 C의 상속 지분 가액 138,299,875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L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권액에 포함할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C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L의 피고와 C에 대한 채권은 120,000,000원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점, ② 망인과 L 사이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소송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루어졌고, 실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에 말소된 점, ③ 피고와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L에 대한 망인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경아

별지

1) 원고 청구취지 기재 '2017. 4. 12.'는 오기로 보인다.